뉴욕교회협의회 부회장 확정 공고에 대한 견해

지난 4월 18일로 공고된 뉴욕 교협 부회장 확정에 대한 사항은 실로 교회협의회의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교협 임원및 법규위원들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유민주주의 제도안에서 사는 자유 시민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월권을 행사하면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자유 시민이나 회원의 자세요 태도라 생각합니다.

법과 회칙은 일반 사회의 법과 상식의 한계 내에서 통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협이 공고한 내용에 “본 회 제 48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이기응 목사가 사퇴 하였으므로 부회장의 결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회 제 49회 임원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공석중인 부회장 자리에 박태규 목사(뉴욕새힘장로교회 담임)가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합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회장 선출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었습니까? 만약 제 3장 15조(보선)에 의하여 부회장을 선출하였다면 제3장은 임원과 위원회만을 위한 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법에 각 장을 정해 놓은 이유는 다른 사항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임으로 임원회에서 임명과 사퇴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원이라도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원이기에 임원회에서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11장에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3, 4조에 따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장 5조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기 총회든 임시 총회든 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기에 회원으로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교협 임원회의 조치는 임명직과 선출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 내지는 안일한 처사임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의 국무회의의 의장은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만약 교협의 공고를 적용한다면 선출직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선출과 탄핵을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고된 회칙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면 회원들의 참여도나 공헌도를 탓하기 앞서 49회기 임원들은 회칙 제8조 8항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스스로 상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교협을 사랑하는 모임과 뉴욕 목사회 및 여러 회원들의 동참으로 항의하는 바이니 불법을 속히 수정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부회장을 선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수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

2023년 5월 2일